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1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신장식・황운하・차규근

서왕진 • 김재원 • 민병덕

김선민 · 김준형 · 최민희

노종면 • 이훈기 • 박민규

이정헌 · 조인철 · 이준석

양문석 · 김우영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 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 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 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,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 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6조의2 신설, 제10조, 제1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이사는"을 "이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"로, "대표성을 고려하여"를 "대표성·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 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

선정한 방송 • 미디어 • 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, 심사,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 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 행정학 그 밖에 방송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3. 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
- 4. 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- 제10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의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진흥회에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 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진흥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임기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 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.
 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 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
 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- ④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추천위 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 며,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 | 제6조(임원) ① |
|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| <u>15명</u> |
| 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 | |
| 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| |
| 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| , |
|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| |
| 한다. | .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<u>이사는</u> 방송에 관한 전문성 | ④ 이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자 |
| 및 사회 각 분야의 <u>대표성을</u> | 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|
| <u>고려하여</u>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| |
| 명한다. | <u>대표성·다양성을 고려</u> |
| |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|
| | 된 사람을 |
| | |
| <u><신 설></u> | 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|
| |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|
| |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
| | 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|
| |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 |
| | 람 4명. 이 경우 소속 의 |
| | 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 |
| | 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|

<신 <u>설></u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 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
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 하는 사람 1명
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 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 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선정한 방송·미디어 •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
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합 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,

⑤ • ⑥ (생략)

<신 설>

심사,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 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u>⑥</u>·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 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 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방송 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
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 결한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11. (생략) <신 설>

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
- 4. 방송・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 이 되는 사람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10의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추천에 관 한 사항
- 11. (현행과 같음)
- 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진흥회에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진흥회는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임

- <u>기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장후</u> 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<u>다.</u>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 는 위원의 수가 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 아야 한다.
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 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 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 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
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④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 보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

<u>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</u>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 여야 한다.

- ⑤ 이사회는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 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